

재해유족급여 등분 청구서

※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 예 [] 아니요
	주소		사망한 군인과의 관계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계좌번호	
	군인·공무원·사학연금 수급 여부 [] 수급 [] 미수급	연금 종류 [] 군인 퇴역(상이)연금(. . .) [] 공무원 (조기)퇴직연금(. . .) [] 사학 (조기)퇴직연금(. . .)	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 예 [] 아니요
	주소		사망한 군인과의 관계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계좌번호	
	군인·공무원·사학연금 수급 여부 [] 수급 [] 미수급	연금 종류 [] 군인 퇴역(상이)연금(. . .) [] 공무원 (조기)퇴직연금(. . .) [] 사학 (조기)퇴직연금(. . .)	
청구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자택 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[] 예 [] 아니요
	주소		사망한 군인과의 관계
	급여 수령 금융회사명	계좌번호	
	군인·공무원·사학연금 수급 여부 [] 수급 [] 미수급	연금 종류 [] 군인 퇴역(상이)연금(. . .) [] 공무원 (조기)퇴직연금(. . .) [] 사학 (조기)퇴직연금(. . .)	

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청구인 제출서류	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(청구인이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(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 4. 혼인관계증명서 1부 5.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6.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 2. 장애인 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1. 청구인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(실제 거주하는 주소)를 적으십시오.
 - 2.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.
 - 3. 청구인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.
- ※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,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.

처리절차

청구인	경유기관	처리기관
	없음	국군재정관리단장
청구서 작성		접수 ↓ 확인·결정 ↓ 등분 지급